

의안번호	2217292
의 퇴 인	장철민 의원
회 답 일	2026. 2. 20.
추계번호	26A071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1조제5항 신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부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음 - (현행) 연구원에 대한 지원시책에 <u>사업비 및 운영비 보조</u> 에 관한 사항 포함 - (개정안) <u>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함</u>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51조제5항 신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안 제51조제5항 신설)
- 정부 세출예산상 편성되는 지원금의 비목이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변경되는 것만으로는 추가적인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나, 출연금의 경우 용도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보조금과 달리 일반재원으로 교부하여 피출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연구원에 대한 지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보조금의 경우 사용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도록 하여 피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등 기관의 일반운영을 위한 용도로 교부하는 것이 제한되고¹⁾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국고로 반납하여야 하는 반면, 출연금은 사용 용도를 정하지 않고 기관의 일반운영을 위한 용도로 교부할 수 있으며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또한 기관 세입에 계상됨²⁾

1) 보조금을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거나 기금 전출금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기관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나(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수지차 보전 기관이 아니며 기금 전출금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2) 출연금과 보조금의 비교

구분	출연금	보조금
정의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민간이 대행하게 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재정상 원조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등
일반법적 근거	없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별법적 근거	반드시 법률의 지원근거 필요 (「국가재정법」 제12조)	대부분 개별 법령에 “보조할 수 있다 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명기, 반드시 개별법에 지원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용도지정 여부	기관출연금의 경우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일반재원으로 사용되고, 목적출연금의 경우 사용용도가 지정됨	반드시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자의 재량 여지가 없음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처리	기관운영출연금(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은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 가능(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중앙관서의 장은 사후정산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국고에 반환 처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자료: 국회의정연수원 「예결산검토 표준교재: 출연금」(2024.8.) p.6 일부 발췌

- 현재 연구원은 기본연구, 연구정보서비스, 연구관련사업 등 사업 수행과 기관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 예산만을 교부받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이를 출연금 예산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 세출예산상 연구원의 사업비와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경상운영비가 각각 구분되어 편성될 수 있으며,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역시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연구원의 세입으로 계상될 수 있음

[표 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원 사업 현황(2026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코드)-내역사업명	사업 개요	수행방법	2026년도 예산
지식재산연구 활성화 (1232-3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운영 지원	지재권 분야의 경제·법제·정책 기초자료와 방법론을 제공하는 기초연구, 동향정보 분석 등을 통해 지재권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 지원	보조	4,385

자료: 지식재산처 소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 과정에서 기관의 일반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수요가 각각 반영되면서 연구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 예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또한 국고로 반납되지 않아 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등 순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을 산출하려면 연구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 비목이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규모를 추산하여야 하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소요 비용을 추계하기 곤란함
 - 연구원에 대한 지원방식이 보조에서 출연으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 규모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연구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장설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654	shjang@assembly.go.kr